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토론회



주제1. 동물보호수준 제고 및 체계 정비

좌장 | 우희종 서울대학교 수의대 교수

일시 8월 9일 14:00-15:00

발제 |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장소 온라인 토론회  **YouTube** 생중계

토론 | 권유림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대표
한 혁 동물자유연대 전략사업국장
유영재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
양성철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사무관

주최 동물복지국회포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자유연대
동물권행동 카라
한국법제연구원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토론회



주제1. 동물보호수준 제고 및 체계 정비

좌장 | 우희종 서울대학교 수의대 교수

일시 8월 9일 14:00-15:00

발제 |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장소 온라인 토론회  YouTube 생중계

토론 | 권유림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대표

한 혁 동물자유연대 전략사업국장

유영재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

양성철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사무관

주최 동물복지국회포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자유연대
동물권행동 카라
한국법제연구원

토론회 순서

◆ 인사

14:00 - 14:03	개회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
14:03 - 14:05	환영사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 주제 발표

14:05 - 14:20	발제 1. 위기동물 보호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방향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	--

◆ 패널 토론 (좌장 : 우희종 서울대학교 수의과대 교수)

14:20 - 14:27	토론 1. 동물학대 관련 현행 동물보호법의 한계와 개선점 권유림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대표
14:27 - 15:34	토론 2. 위기동물 대응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 혁 동물자유연대 전략사업국장
14:34 - 14:41	토론 3. 위기동물 보호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방안 유영재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
14:41 - 14:48	토론 4. 동물보호수준 제고를 위한 정부정책 방향 양성철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사무관
14:48 - 14:58	자유토론
15:00	정리/폐회

[개 회 사]



안녕하세요,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 대표의원 박홍근입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 공동주최로 참여하여 함께 준비해주신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법제연구원, 동물자유연대, 동물권행동 카라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물보호법에는 조금씩 성장해온 우리나라 동물복지의 나이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991년 ‘동물보호와 국민의 정서함양’중심의 단 12개의 조문으로 제정되었다가 20여 차례의 크고 작은 개정을 거쳐 지금은 47개 조문을 통해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 중심의 적극적인 동물복지제도로 진화해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동물복지 향상에 대한 수준 높은 국민적 인식과 요구에 법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동물 학대범죄와 개물림 사고 등이 계속되면서 제도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요구들을 날개가 아닌 전면적이고 통합적인 입법대안으로 묶어 법안 발의와 통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토론회의 출발은 2015년 동물복지국회포럼이 출범한 이래 매우 유기적인 파트너십을 맺어온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의기투합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난해 동물보호법 제정 30주년을 맞아 동물복지국회포럼은 다양한 영역에서 축적된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를 전부개정안 형태로 담아보자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안 드렸고,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로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용역까지 잘 마무리되면서 오늘 토론회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번 시리즈 토론회의 주제는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동물의 보호, 복지,

관리와 이를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정책수립 및 시행체계 등 동물보호법 전반에 걸쳐있습니다. ▲그동안 반려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학대행위자에 대해 동물사육을 금지하는 동물학대 예방체계 마련, 동물판매업 허가영업 변경과 더불어 ▲등록대상동물 관리의무 강화, 맹견 사육 허가제 등 국민안전과 반려견 안전관리 ▲동물실험의 윤리성 제고를 위한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신설 등을 다루게 될 것이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도입과 동물복지진흥원 등 새롭게 제기되는 제도와 거버넌스 체계에 대해서도 집중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토론회 주제와 내용에는 더 이상 추가논의가 필요 없을 정도로 합의된 내용도 있지만, 관계 단체들과 입장을 조율해야할 쟁점들도 있고, 관계부처와 풀어야할 난제도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쟁점은 쟁점대로 이견을 좁히고, 난제는 난제대로 해법과 동력을 마련하는 성과있는 토론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토론회의 성과는 8월말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입법발의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모든 동물복지역량과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끝으로, 시리즈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주신 우희종 교수님의 동물복지를 향한 신념과 헌신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1회 토론회의 발제를 맡아주신 한국법제연구원 장은혜 박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토론에 참여하신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권유림 대표님, ‘동물자유연대’ 한혁 전략사업국장님, ‘비글구조네트워크’ 유영재 대표님, ‘농림축산식품부’ 양성철 사무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된 국민적 인식과 정치적 분위기로 어느 때보다 입법의 여건은 고무적입니다. 이번 토론회가 더욱 탄력을 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동물복지 전면 개정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해봅시다.

감사합니다.

2021. 8. 9

국회의원 박 홍 근

[축 사]



안녕하십니까.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 이현승입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포럼 회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자유연대, 동물권행동 카라, 한국법제연구원과, 유튜브로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려인구 천만 시대를 맞아 동물보호와 동물복지 관련 이슈가 방대해지면서, 동물보호법의 골격과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포럼에서는 정부, 학계, 시민단체와 함께 지난 1년간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방안을 열심히 논의해 왔습니다.

기존 제도의 문제점과 선진국 사례를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나라 여건에 맞게 기존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지, 새로운 제도를 어떻게 도입할지 다양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이제 공개토론회를 통해 그동안 저희가 고민하고 연구해왔던 전부개정 방안을 국민들에게 공유드리고, 많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동물보호에 관심 있는 분들의 시청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동물보호법이 국민들의 공감 속에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담긴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 4일에 걸쳐 많은 전문가분들이 발제와 토론에 참여하십니다.

코로나와 무더위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준비해주신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8. 9

국회의원 이 헌 승

[축 사]



반갑습니다.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 한정애 의원입니다.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박홍근, 이현승 공동대표 의원님, 그리고 한준호 책임연구의 원님을 비롯한 회원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뜻깊은 토론회를 함께 해주신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자유연대, 동물권행동카라와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쁜 마음입니다. 동물보호법은 1991년에 제정되어 올해로 시행 30년을 맞았습니다. 제정 당시에는 단 12개 조문이었지만,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이슈와 국민적 요구에 따라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지금의 모습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 반려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동물을 보호하지 못하는 동물보호법이라는 비판으로 법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은 실정입니다.

그동안 동물보호법은 타 법률에 비해 큰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인구주택총조사 항목에 반려동물이 반영되었고, 지난달에는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동물권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관심 등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동물보호법 또한 동물권의 달라진 시대상에 따라 전면적인 보완 및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동물보호법의 입법 목적에 따라 동물보호수준 제고 및 체계 정비, 동물복지 및 동물이용의 윤리성 강화, 동물 관리 강화, 또한 이를 실행해나갈 수 있는 동물보호·복지 정책의 수립과 시행 등 동물보호법이 기본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법은 시대의 가치를 담는 그릇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미약한 존재가 안전함을 느낄 수 있어야 모두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동물과 사람간의 조화로운 공존과 같은 철학적 가치가 이번 개정안에 잘 담길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 힘을 모아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 또한 동물권 향상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무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1. 8. 9

국회의원 한 정 애

[축 사]



반갑습니다. 동물자유연대 대표 조희경입니다.

먼저 언제나 동물복지의 향상에 앞장서고 오늘 토론회를 마련해주신 동물복지국회포럼 대표, 그리고 소속 의원님들과 농림축산식품부, 동료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동물보호법 제정 및 시행으로부터 꼭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91년 제정 및 시행된 동물보호법은 동물보호를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단행법률로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입법 목적 및 상징성과는 달리 총 12개의 조문으로 실효성 없는, 말 그대로 명목상의 법률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두 차례의 전부개정과 몇 차례 일부개정을 통해 동물학대 조항과 처벌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동물의 구조 및 보호조치, 동물복지축산인증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등 미흡하나마 농장동물 및 실험동물의 복지를 강화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의 오늘은 암담하기만 합니다. ‘고양이N번방사건’과 같이 동물학대는 날로 잔혹해지고, 한해 유기되는 동물의 수는 두 해 연속 13만 마리를 넘었습니다. 또 지난해 동물실험에 희생된 동물의 수는 통계작성 이래 최대치인 414만 마리를 기록했습니다. 동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동물보호법에 대한 탄식이 끊이질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동물보호법의 전부개정을 위해 준비된 이번 토론회는 그 자체로 의미가 큼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동물보호법의 입법 목적인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의 관점에서 동물을 어떻게 보호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반영한 법개정의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우리 인간은 고대로부터 다른 생명체인 동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하는 것이 인간다운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왔습니다. 동물복지와 동물권리는 이러한 ‘인간다움’이라는 화두의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동물의 보호와 이용, 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동물보호법은 우리사회의 ‘인간다움’에 대한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법은 동물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과 분명한 괴리가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개정을 요구하고 각계의 전문가들이 이렇듯 머리를 맞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부디 이번 토론회의 귀한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어 동물보호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인간다운 사회로 다시 한번 크게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토론회를 준비하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가정에도 안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8. 9

동물자유연대 대표 조 희 경

[축 사]



우리 동물보호법이 제정 된지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아쉬움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상징적 선언에 그쳤던 최초 동물보호법은 시대의 변화, 동물들에 대한 국민 인식의 향상과 더불어 조금씩 발전해 왔습니다.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상향,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과 같은 영업 규제 강화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한편, 실효적인 동물학대 행위의 제어와 예방이나 인간과 동물의 이익 충돌 지점에서 어떻게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법적 보장은 여전히 묵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미성년자 해부 실습의 전면 금지나 생매장 살처분 행위의 처벌, 그리고 개식용행위에서 파생되는 극단적 동물학대 행위의 원천적 금지 같은 주요한 동물권 침해 행위들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 그 한 예입니다. 반려동물로 등록해야 할 대상을 ‘반려목적’이라는 단서를 달아 스스로 법을 무력화한다거나 학대자에게서 압수한 피학대 동물을 돌려주어야 하는 아이러니, 이 외에도 현행 동물보호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은 여러 가지입니다.

최근 민법 개정을 통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법 개정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동물과 인간이 맺고 있는 관계성이 더 이상 그들을 물건과 동일한 하나의 객체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금번 농식품부의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 시도에 대해서는 법체계의 기술적 정비, 학대자에게서 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명시하려 한 점, 영업 행위에 대한 규제를 상향하고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일부 한계에도 불구하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국민의식과 발맞추고 한국의 국가 위상에 걸맞는 생명존중과 실효적인 학대 제어에는 못 미치고 있어 여전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번 연석 토론회를 거쳐 금번 법 개정을 확보, 현실화하고 이후 발전적 추가 개정을 위해 무

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정리하고 합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국회동물복지포럼 그리고 특히 언제나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 하시며 현장에 나서주시는 박홍근 의원님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농식품부 동물보호과와 법제연구원에도 개정안 마련을 위해 연구 노력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2021. 8. 9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전 진 경

목 차

발 제

위기동물 보호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방향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토론

01. 동물학대 관련 현행 동물보호법의 한계와 개선점
권유림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대표
02. 위기동물 대응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 혁 동물자유연대 전략사업국장
03. 위기동물 보호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방안
유영재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
04. 동물보호수준 제고를 위한 정부정책 방향
양성철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사무관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토론회
주제1. 동물보호수준 제고 및 체계 정비

발 제

위기동물 보호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방향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2021.8.9.(월)

한 국 법 제 연 구 원

위기동물 보호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방향



■ 동물학대조항 개선 및 재발방지

1. 동물학대의 범위 확대
2. 학대행위자에 대한 동물사육금지처분 및 수강명령 등 병과
3. 피학대동물의 구조, 보호강화 등

■ 유기·피학대동물 구조 및 보호수준 제고

1.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2. 사육포기동물의 인수 등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동물학대조항 개선 및 재발방지

1. 동물학대의 범위 확대
2. 학대행위자에 대한 동물사육금지처분
및 수강명령 등 병과
3. 피학대동물의 구조, 보호강화 등

KLRI 1. 동물학대의 범위 확대

■ 학대 규정 관련 주요 개정 내용

- 1) 시행규칙 규정내용의 법률 상향: 형벌의 대상이 되는 학대 관련 금지행위의 내용이 시행규칙에서 비로소 구체화되는 부분에 대한 개선
- 2) “소유자등”이 주체가 되는 금지행위를 구체화
 - 현행은 유기(遺棄)의 경우만 처벌(300만원 벌금)
 -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 위반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치상)에 대한 금지 명시(처벌-2년, 2천만원)
 -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 위반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치사)에 대한 금지 명시(처벌-3년, 3천만원)

4

한국법제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of Legislation & Politics

KLRI 1. 동물학대의 범위 확대

■ 학대 규정 관련 개정안 주요 내용(1)

개정안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비고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허용된 행위는 제외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시행규칙 내용 상향
4.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시행규칙 내용 상향

5

한국법제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of Legislation & Politics

KLRI 1. 동물학대의 범위 확대

■ 학대 규정 관련 개정안 주요 내용(2)

개정안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비고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지행위가 정의규정의 학대내용으로 한정되지 않도록 개정
1. ~ 3. 현행과 동일(문구 일부 조정)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시행규칙 내용 상향
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험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라.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6

한국법제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of Legislation & Politics

KLRI 1. 동물학대의 범위 확대

■ 학대 규정 관련 개정안 주요 내용(3)

개정안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비고
③ 누구든지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이 항에서 “유기·유실·피학대동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문과 각 호의 내용 체계정리
1.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	
2.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3.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4. 유기·유실·피학대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다만, 구조 목적으로 유기·유실·피학대동물을 구매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단서 추가 검토 중

7

한국법제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of Legislation & Politics

KLRI 1. 동물학대의 범위 확대

- 학대 규정 관련 개정안 주요 내용(4)

개정안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비고
④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소유자등에 대한 금지행위 구체화
1. 동물을 유기(遺棄)하는 행위	➢ 맹견을 유기한 경우 2년, 2천만원 ➢ 맹견유기를 제외한 동물유기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위생·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제2호의 행위로 인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⑤ (현행과 동일)	

KLRI 2-1. 동물사육금지처분의 병과

- <제도신설> 학대행위자에 대한 **동물사육금지처분** (안 제11조, 제12조)

구분	내용
청구권자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
처분권자	■ 법원
처분의 근거	■ 법원의 직권으로 ■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처분의 방식	■ 학대등의 금지규정(안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병과
처분의 종료	■ 동물사육금지처분의 기간이 지난 때

KLRI 2-1. 동물사육금지처분의 병과

- <제도신설> 학대행위자에 대한 **동물사육금지가처분** (안 제11조, 제12조)

구분	내용
청구권자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
처분권자	▪ 법원
처분의 근거	▪ 법원의 직권으로 ▪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청구사유 및 처분사유	▪ (청구)동물의 소유자등이 안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동물에게 적절한 치료·보호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 ▪ (법원) 피학대동물의 생명, 안전 및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처분의 종료	▪ 소유자등에 대하여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위반에 대한 확정판결이 선고된 때

10

한국법제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of Law and Policy

KLRI 2-1. 동물사육금지처분의 병과

- **동물사육금지처분 또는 동물사육금지가처분** (안 제11조, 제12조)

구분	내용
▪ 처분의 효과	▪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받은 자 및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 기간 동안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수 없음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반환규정(안 제4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등에게 해당 피학대동물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음
▪ 처분의 집행 ➢ 동물사육금지처분: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동물사육금지가처분: 판결 확정 전 소유자등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집행권자는 처분을 받은 자가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고 있는 동물을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함

11

한국법제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of Law and Policy

KLRI 2-2. 수강명령 등의 병과

- <제도신설>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안 제101조) (1)
 - 법원은 동물학대행위자에게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선고유예는 제외)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음
 -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 병과
 - 법원이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음
 -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

12

한국법제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of Law and Social Policy

KLRI 2-2. 수강명령 등의 병과

- <제도신설>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안 제101조) (2)
 -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
 -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
 -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
 -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 집행
 -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내용
 - 동물학대 행동의 진단·상담
 - 소유자등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게 하기 위한 교육
 - 그 밖에 동물학대행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3

한국법제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of Law and Social Policy

KLRI 3. 피학대동물의 구조, 보호강화 등

- <제도신설> 사육계획서 제출 의무 신설(안 제43조제2항 등)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유자등으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한 동물을 반환받으려는 소유자
 - 1) 학대행위의 재발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계획서(사육계획서) 제출
 - 2) 보호비용을 부담하고 반환 요구
 - 사후관리: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을 반환받은 소유자가 제출한 사육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동물보호감시원에게 점검하도록 할 수 있음

1.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2. 사육포기동물의 인수 등

KLRI 1.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1)

● <민간동물보호시설>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 등을 하여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제 도입**
 -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명칭, 주소, 규모 등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신고
 -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대해서는 내용을 검토하여 수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시설의 환경개선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16

한국법제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of Legislation & Politics

KLRI 1.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2)

● <민간동물보호시설 설치자(신고가 수리된 보호시설 설치자)의 의무>

- 1) 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운영기준 준수
- 2) 동물보호를 위한 시설정비 등의 사후관리
 - 1) 또는 2)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1) 또는 2)를 위반한 보호시설설치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고 있는 동물에 대한 관리 또는 처리방안 등을 마련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① 보호시설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려는 경우
 - ② 보호시설을 영구적으로 폐쇄하려는 경우
 - ③ 보호시설의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

17

한국법제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of Legislation & Politics

KLRI 1.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3)

●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폐쇄 등>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시설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 1) 또는 2)의 경우는 필요적 폐쇄명령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 2) 안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학대행위 등 금지 규정)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3)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반복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 5)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호시설을 운영한 경우

KLRI 1.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4)

● <민간동물보호시설 설치자가 되거나 보호시설 종사자로 채용될 수 없는 경우>

- 1) 19세 미만인 사람
-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3)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안 제10조-학대행위 등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4)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KLRI 2. 사육포기동물의 인수 등 (1)

● 소유권 포기 동물의 인수

- 시·도지사 and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인수할 수 있음
 - 1)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받은 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동물
 - 2)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을 받은 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동물

● 소유자등의 동물인수 신청

- 소유자등은 시·도지사 and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의 인수를 신청할 수 있음
 - 시·도지사 and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동물의 인수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그 동물의 소유권은 시·도 및 시·군·구에 귀속
 - 시·도지사 and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인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음
 - 시·도지사 and 시장·군수·구청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의 인수를 신청하는 등 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동물인수신청을 거부할 수 있음

■ 참고: 관련 국외 입법사례

1. 독일
2. 미국
3. 대만

KLRI 1. 독일 연방동물보호법(1)

- 소유권 제한(동물보호법 제16a조) " 양도명령" – 주체: 관할청
 - 관할청은 피학대동물을 사육자로부터 분리하여 임시적으로 위탁할 수 있고, 동물보호소에 맡길 수 없는 동물의 경우에는 양도조치(피학대동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명령)을 할 수 있음
 - 동물 양도조치는 소유권 상실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점에서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 위탁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양도조치를 하도록 함

22

 한국법제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of Law and Policy
KLRI 1. 독일 연방동물보호법(2)

- 동물사육금지명령(동물보호법 제20조) 주체: 법원
 -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 책임무능력 등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면한 자가 학대 관련 범죄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는 경우
 -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또는 장기적으로 적용
 - 판결이나 약식명령의 형태로 법적 효력이 발생
 - 동물사육금지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 부과

23

 한국법제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of Law and Policy

KLRI 2. 미국(1)

● 소유권 제한(소유권 상실)

- 미국 대다수의 주(44개)는 학대 또는 방치행위자가 유죄판결을 받기 전에 피학대/피방치 동물을 압수(seizure)할 수 있도록 허용하나 몰수(소유권상실)의 방법에서는 차이를 보임

● 사육금지

- 아리조나 주(Arizona Statute 13-2910) 동물학대행위자에 동물사육 3년 금지
- 델라웨어 주(Delaware Code Ann. Title11, Part1, Chapter 5, Subchapter VII, 1325) A급 경죄의 경우 피해동물 몰수 및 5년 동물사육금지, F급 중죄의 경우 피해동물 몰수 및 15년 동물사육 금지

24

한국법제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of Law and Social Sciences

KLRI 2. 미국(2)

● 미국 주별 동물몰수 방법

몰수 방법	주
압수된 동물의 소유자가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몰수	델라웨어, 메인, 매사추세츠, 네브래스카, 뉴햄프셔,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테네시, 워싱턴, 위스콘신
담보금 미지급(failure to post security) 시 유죄판결 전 피학대/피방치 동물 몰수 (8개 주)	알래스카, 인디애나, 루이지애나, 미시건, 미주리, 뉴욕, 유타, 와이오밍
피학대/피방치 동물의 향후 처분결정을 위해 소유자가 심리를 청구 (6개 주)	캘리포니아, 조지아, 메릴랜드, 미네소타, 미시시피, 웨스트버지니아
압수기관, 보호기관 또는 기소당국에 피해동물의 처분 결정을 위한 심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 (6개 주)	애리조나, 일리노이, 캔자스, 몬태나, 오리건, 버몬트
반드시 심리를 거쳐 피해동물의 처분 결정 (8개 주)	콜로라도, 코네티컷, 플로리다, 아이오와, 뉴멕시코, 사우스 캘리포니아, 텍사스, 버지니아

25

한국법제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of Law and Social Sciences

KLRI 3. 대만

- 소유권 제한
 - 학대행위자 소유 동물에 대한 몰수 처분. 주체: 행정청
- 사육금지
 - 학대행위자는 등록대상동물사육 불가
 - 동물보호소에서 동물입양 불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해당 동물의 필요적 몰수

THANK YOU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제1차 전문가 토론회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토론회
주제1. 동물보호수준 제고 및 체계 정비

토론 ①

동물학대 관련 현행 동물보호법의 한계와 개선점

권유림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대표

제1장 현행 동물보호법의 규정 및 문제점



1. 현행법 규정 및 문제점

■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제8조 제1항)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1. 현행법 규정 및 문제점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제4호)

← 일반조항의 형식으로 규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학대행위의 금지)

①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처벌의 예외가 되는 "정당한 사유"를 정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를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음

->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학대규정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를 규율하지 못하고 있음

적용 사례)

-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강아지를 살해한 사건,
- 이웃 협박 목적 고양이 살해 사건
- 사설보호소에서 공간부족을 이유로 한 대규모 안락사

↓

현실과 법조문의 괴리

동변

1. 현행법 규정 및 문제점

■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제8조 제2항)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의2.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변

1. 현행법 규정 및 문제점



3의2.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의무(시행규칙 별표1의2)**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 2018년부터 시행된 조항
-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방임으로 인한 동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됨
- **애니멀호더 처벌법**으로 불리기도 함

- 단순히 사육관리의무만 위반하였을 뿐 동물에게 **상해나 질병**을 유발시키지 않았다면 본 조항에 의한 처벌을 하기 어려움
- **반려동물에 한정**하고 있어 **펫샵** 등이 사육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음

1. 현행법 규정 및 문제점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제4호)



⑥ 법 제8조제2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3.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4.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시행규칙에서 "**정당한 사유**"가 아닌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지나치게 좁게 규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신체적 고통에 대한 명확성 부족



1. 현행법 규정 및 문제점

■ 동물의 포획, 판매 등과 관련된 행위 (제8조 제3항)

다음 각 호의 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 구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유실 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 수년간 사비로 길고양이를 돌봐온 캣맘 A
- 구조한 길고양이 치료 후 입양을 보내는 과정에서 3~5만원 정도의 소정의 책임비를 받음
- 길고양이를 혐오하는 커뮤니티에서 길냥이 납치 후 돈벌이라며 조롱
- 캣맘의 위 행위를 유실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한 행위라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국민신문고 및 경찰에 신고
- 캣맘 A는 해당 고양이의 경우에도 책임비보다 수십배에 달하는 병원비 등을 지출한 내역이 확인되고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영리를 취하려는 목적 또는 동물학대의 고의 부존재
- 판매의 법률적 의미 : 상품 따위를 팔
- 농림부 : '유기동물 구조자가 비록 책임비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구조한 동물을 입양 보낼 때 돈을 받았다면 포획하여 판매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
- A 기소유에 처분



1. 현행법 규정 및 문제점

■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 제도의 부진한 실효성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7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실·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로부터 제8조 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걱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시행규칙]

제14조(보호조치 기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학대받은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하되 **3일 이상 소유자로부터 격리조치 하여야 한다.**

현행법상 격리조치를 행할 수 있는 주체는 지자체 공무원에 한정되어 있고 경찰력은 그 주체에서 배제

현행법이 '격리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격리의 시점이나 대상에 대한 판단 기준' 등 요건이 구체화되어 있지 현장에서 혼란 가중

구조 활동에 있어 수반되는 사유지 침입 혹은 강제개문 등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에 대한 면책 조항이 없어 구조 자체가 무력화되는 상황도 자주 발생

학대행위자에 대한 동물 소유권 제한·박탈 규정의 부존재

진도군-수의사 부재?
다수의 개체 중 피학대개체와 학대받지 않은 개체 혼재시??



제2장 동물보호법의 개정방향



2. 개정방향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상해의 경우도 동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학대행위의 금지)

①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한국법제연구원의 개정안

- 시행규칙의 내용을 법으로 상향
- 시행규칙의 금지행위 규정 추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학대행위의 금지)

①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2.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 존재하여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 세부적인 정당한 사유 추가하여 일반조항으로 처벌 가능성을 열어줘야!!!



2. 개정방향

■ 동물의 포획, 판매 등과 관련된 행위 단서 추가 (제8조 제3항)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 구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유실 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 학대 규정 관련 개정안 주요 내용(3)

개정안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비고
③ 누구든지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이 항에서 "유기·유실·피학대동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문과 각 호의 내용 체계정리
1.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	
2.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3.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4. 유기·유실·피학대동물임을 알면서 알선 구매하는 행위. 다만, 구조 목적으로 유기·유실·피학대동물을 구매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단서 추가 검토 중

- 추가 검토 중인 단서 추가 부분을 4호에 한정하는 것이 아닌 제3항 본문으로 상향 배치하되, **영리추구나 동물학대 고의 없이 구조목적으로 포획한 동물에 대한 금전교부는 판매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입법화할 필요성도 있다고 사료됨!!



2. 개정방향

■ 학대행위자에 대한 동물 소유권 제한·박탈 규정의 신설 필요

- 동물의 건강상태 여부와 무관하게 지자체가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 소유한 **피학대동물을 지속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더라도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경우에는 **피학대동물을 반환하지 않고 보호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동물 관련 범죄로 인해 벌금 이상의 전과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는 **소유 동물에 대한 소유권 제한 또는 박탈을 할 수 있는 근거 및 향후 일정 기간 동물관련기관에 취업을 금지하거나 동물 소유 자체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반려동물 영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있으나(제34조 제4항 제5호), 동물관련기관 등 취업 등에 대한 제한은 존재하지 않음

개정안 내용 중 **동물사육금지처분의 병과** 관련부분은 전체적으로 동의!!

다만, 동물학대금지 규정 위반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동물사육금지 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토론회
주제1. 동물보호수준 제고 및 체계 정비

토론 ②

위기동물 대응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 혁 동물자유연대 전략사업국장

위기동물 보호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방향

한혁 동물자유연대 전략사업국장

1. 개정안(발제문)에 대한 의견

가. 개정안(발제문)은 △동물학대조항 개선 및 재발방지 △유기·피학대동물 구조 및 보호수준 제고를 목표로

- 동물학대에 대해서는 학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학대행위자에 대해 기존 형사처분에만 머무르던 방식에서 벗어나 사육금지처분 및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병과하고, 사육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식을 신설,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반환시에도 '사육계획서' 제출 및 이의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피학대동물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호
- 또한 유기·피학대동물 구조 및 보호수준 제고를 위해 민간동물보호시설에 대해 신고제를 도입 관리 및 지원하고,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소유권 포기동물에 대해 인수제를 시행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나.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유기, 피학대 동물을 구조·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의 마련이 동물 보호에 있어 우선적 입법과제임은 이견 없음

다. 동물학대조항 개선 및 재발방지 관련내용중

-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의 경우, 해석상 문제가 생길 수 있음.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야 하는게 '먹는 동물'인지 '먹이로 사용되는 동물인지'가 불분명해 보임. 실제 몇 년전 '살아있는 동물 피당사건'이 벌어졌을 때에도 "뱀과 같은 동물에게는 몇 달에 한번씩 '살아있는 동물'을 먹이로 제공하는 것이 뱀의 습성에 맞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음.
- '유기·유실·피학대동물'에 대해 포획 및 판매와 함께 이러한 행위의 알선·구매 행위도 동물학대 개념에 포섭하면서 '구조목적 구매'를 예외로 하는 단서조항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
- 사육금지가처분이 피학대동물 보호를 위해 기능하려면 법 14조에 따른 '긴급격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임. 피학대동물을 학대자로부터 우선격리하여 증거인멸, 추가학대 등을 막기 위해서는 긴급격리제도를 보완, 강화하는 것이 필요
- 수강명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제의 신설은 동물학대 재발을 막기 위해 필수적 조치임.

따라서 제도 운영을 위해 적합한 교육 및 치료프로그램의 개발 대책이 함께 고민되어야 함

라. 유기·피학대동물 구조 및 보호수준 제고를 위한 내용과 관련

- ‘신고제’ 도입전 유예기간을 통해 현재 열악한 조건하에서도 유기·피학대동물들을 헌신적으로 구조 보호하고 있는 민간 사설보호시설들이 적합한 시설과 운영능력을 갖추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 그러나 현재의 개정안은 민간동물보호시설에 대한 각종 기준과 의무사항들은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반면,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정도의 임의조항으로 두고 있음.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이 동물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민간에 떠넘기는 방식이 아닌, ‘민관협력’을 통해 인도적인 유기·피학대동물 대책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고민되어야 함
- 민간사설보호소 지원에 따른 애니멀호더, 생산업자의 위장영업행위 등을 방지할 대책도 필요
- 국가(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한계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평택시등에서 추진중인 ‘임시보호제도’¹⁾의 도입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육포기동물 인수제’의 시행은 필요. 단순 ‘사육포기’가 아닌 가족이 없거나 연락두절 등으로 돌보는 사람이 없는 독거노인, 1인 가구 등이 사망, 치매, 장기입원, 그 밖의 사유로 기르던 반려동물을 보호·관리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²⁾ 또는 가정폭력사건 피해자의 반려동물 등에 대해 ‘긴급인수’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2. 개정안(발제문)에 대한 추가 의견

가. 동물보호법의 위상 강화가 필요

- 동물보호법을 마치 ‘반려동물보호법’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강함. 최근 발생한 용인시 곰사육농가의 밀도살 사건과 관련,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에게 신고하였으나 “곰은 동물보호법상 보호되는 동물이 아니다”라며 출동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으며, 창원에서 승합차로 유기견을 깔아뭉갠 사건에서도 출동 경찰관이 ‘단순교통사고’로 처리하려한 사례도 있음.
- 동물보호법의 위상을 강화, 반려동물이나 길고양이뿐만 아니라 법이 규정한 ‘모든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여야 함.

1) <평택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제15조(동물의 임시보호 등) ①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동물의 정서안정과 사회화 적응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 임시보호하게 할 수 있다.

2) <부산광역시 북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제5조(반려동물의 구조·보호) 제②항

나. 개인의 일탈적 범죄로서의 동물학대뿐 아니라 사회 시스템에 의한 체계적 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농장동물, 실험동물, 야생동물에 대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학대상황을 예방하고 동물에 대한 인도적 배려가 가능하도록 고민해야 함

다. 길고양이, 들개 등 경계성 동물에 대한 학대예방 및 보호

- 길고양이의 경우 중성화사업 또는 구조외의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를 금지
- 길고양이에 대한 중성화사업 진행과정에서 학대적 상황, 오방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
- 도심 재개발사업 시행시 유기견 발생 및 길고양이 보호 조치(생태통로 확보, 임시보호소 설치 등) 필요
- 도심 찾길 동물교통사고 예방 및 피해동물 구호대책 마련
- 동물보호센터 입소 고양이 대상 안락사 시행을 줄일 수 있도록 포획장소 방사 등 보완장치 마련

라. 유기·피학대동물 구조 및 보호수준 제고

- 동물보호센터가 '유실물 보관소' 역할만 하지 않도록, 다치거나 아픈 동물들에 대한 치료 및 보호소내 감염 예방 등을 의무화하고 이에따른 예산과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에서 근거를 마련
- 기증 및 분양(입양)시 사전 교육, 심사절차 시행, 중성화수술 의무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분양(입양)후 유기 또는 학대, 판매행위 등을 예방

마. 야생동물 등 보호

- 소위 '유해조수' 등의 표현을 '관리대상동물' 등으로 순화
- 소위 '유해조수'라 하더라도 구제과정에서 동물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히 규제
- '동물카페' 등을 통해 야생동물이 무분별하게 수입, 생산, 유통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한편, 적발시 몰수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설을 마련

바. '가족에서 이웃으로'

- 반려동물과 관련 동물보호법의 주요 방향은 반려인의 의무를 더 많이 부과하고 미이행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만 진행되어 왔음
- 반려인에 대해 여러 의무사항을 부과하는 것과 함께 반려인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데 있어 겪게되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함
- 사회취약계층도 반려동물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사회적 배려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토론회
주제1. 동물보호수준 제고 및 체계 정비

토론 ③

위기동물 보호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방안

유영재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



프로필

사단법인 비글구조네트워크는 2015년 창단 이후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활동과 함께 실험동물, 피학대 동물, 유기동물 등 구조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주소

본부 : 충남 논산시 벌곡면 검천길 272

연락처

041-734-6680

토론문 작성자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 유영재

jay@beaglerescuenetwork.org

안내

본 토론문은 해당 주제의 다양성과 상호관련성에 입각하여 정책 대안에 필요한 논의를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비글구조네트워크의 정책제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정치 노선을 지지하거나 포함하지 않습니다.

토론회

동물보호 수준 제고 및 체계 정비

“위기동물 보호 강화를 위한 민간협력방안”

목차

- ☐ 서론
- ☐ 민관 거버넌스 구축 중심의 개정방향
 - I. 시·도별 ‘지방동물복지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 II. 경찰청과 소방청과의 민관연합체 필요성
 - III.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보강 및 활용
 - IV. 민간동물보호시설과의 공조체제 마련
- ☐ 민관 거버넌스 구축의 선결 요건
 - 지자체 동물보호 전담의 행정체제 구축 의무화

1차 토론회

2021년 8월 9일 14:00

토론자 : 비글구조네트워크 유영재

토론문 작성 날짜 : 2021.8.6

서론

법무부는 지난 19일 민법 제98조의 2(동물의 법적 지위)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유럽은 물론 미국 그리고 주요 동아시아 국가보다 비교적 늦게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우리나라에서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프랑스에 이어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20년 만에 동물에게 제3의 지위를 부여한 사건은 향후 국내 동물복지에 대한 향상에 상당한 기대감을 갖게하는 것이 사실이다.

세계적인 동물보호 입법 경향과 함께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한 국민의식과 인식변화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국내 민간 동물보호 주체들을 중심으로 동물의 법적 지위를 끌어올리는 부단한 노력을 해왔고, 최근 동물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인간과 똑같이 고통을 느끼고 사회를 공유하는 생명을 가진 피조물이라는 적극적인 최근 법령 해석이 이번 개정안 마련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진다.

이렇듯 20년 만에 이루어진 동물에 대한 법적 지위의 향상만큼 국민의식에 걸맞은 동물보호법 정비와 시스템 개선을 위한 방향을 짚어보기 위해서는 사회 각계각층의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며, 특히 위기동물에 대한 민관의 협력을 통한 개선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찾아보고자 다음과 같이 토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민간 거버넌스 구축 중심의 개선 방향

농림축산식품부도 제2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4)을 통해 동물보호·복지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고 이미 밝혔고 우리나라는 동물보호에 대한 상당하고 구체적인 사무가 지자체에 위임된 만큼 지자체 동물보호복지 분야에 민관이 참여하는 전문 '지방동물복지심의위원회(가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1. 시·도별 '지방동물복지심의위원회(가칭)' 설치의 필요성

현재 국내 특별·광역시와 지방도 총 17곳(8개 시와 9개 도) 가운데 자체 조례로 '동물복지위원회'를 둔 곳은 4개의 시(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뿐이고 지방 9개 도 중에는 경기도가 유일하다. 이 5곳의 시·도도 동물복지위원회의 기능이 단순 '자문기구'의 역할에 국한되어있어 지자체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에 대한 관리와 개선 참여가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향후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위원회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단순 ‘자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지자체의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평가하고 심의하는 기능과 함께 감독과 감사의 기능까지 부여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 기구가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시>

민관 동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1. 민관 동물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

- 1) 동물보호법 제4조 ②의 시·도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에 대한 심의, 의결 및 평가·감사
- 2) 동물복지계획이 계획에 맞게 시행되도록 지도 및 감독
- 3) 시·도지사 및 지자체장에게 동물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요구
- 4) 동물의 학대방지·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수시 점검 및 연 2회 정기감사
- 5)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대한 점검 및 감사

2. 민관 동물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외부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 ① 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②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동물보호법 제4조 제4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 ③ 동물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외부위원
- ④ 동물보호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서 시장 또는 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⑤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서 동물보호연구 또는 생명윤리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⑥ 해당 시·도의회 의원 또는 시·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 ⑦ 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⑧ 위원회는 ②,④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 본 안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의 내용을 참조한 예시임.

II. 경찰청과 소방청의 역할 증대에 따른 민관 연합체 구성의 필요성

향후 민법상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 제3의 법적지위가 부여되면 국가와 사회가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위기동물의 경우 범죄나 화재, 재난 같은 위급한 현장에서 활동하는 경찰관과 소방관의 역할이 증대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부담에 대해 경찰청, 소방청, 시군, 민간단체가 ‘위기동물 대응 연합체’를 구성해서 유기적인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경찰청

현행 동물보호법(제14조 동물의 구조·보호)에는 ‘피학대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 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그 판단 주체가 지자체장 또는 담당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담당 공무원이 제8조 2항의 학대 조항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부족이나 숙지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많아 현장에서 종종 학대자와의 충돌이 발생했다.

또한, 휴일이나 심야같이 담당 공무원이 결석인 경우에는 학대 제보나 신고가 들어와도 동물학대로 격리 조치해야 할 담당 공무원이 없어 현장출동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아 시급을 다투는 학대 사건인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해 상시로 현장출동이 가능한 경찰공무원도 피학대 동물을 격리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이 필요하고, 동물학대 등에 대한 보다 능동적인 범죄 대응 수사 매뉴얼도 구체적인 보강이 필요해 보인다.

2. 소방청

우리나라 가구의 1/3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점을 감안하면 화재나 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소방서가 출동하면 인명구조와 재산보호에 집중하던 기존 구조방식은 시급히 바뀌어야 할 부분이다. 주택과 같은 민간시설에서 화재발생 시 보호자가 긴급 병원으로 후송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현장에서 상해를 입은 반려동물에 대한 처치 없이 11일나 방치되었던 사건이 올해 3월에도 발생했고, 2019년 강원도 고성·속초 산불 때는 재난 시 정부 차원의 동물구조 매뉴얼이 전무하여 민간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봤지만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인해 중구난방이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행안부와 농림부 차원에서의 재난 시 위기동물 구조에 대한 구체적 지침과 함께 소방청, 시군, 수의대학교,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위기동물 대응 연합체’를 구성해 역할 분담이 필요한 화재와 재난 시 위기동물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필요한 시점이다.

III.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보강 및 활용

올해 2021년 6월부터 시행한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의거하여 「동물보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이 동물보호·복지와 관련된 직무 성격상 민간인이 참여하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역할 증대가 기대됨에 따라 명예감시원에 대한

충원과 함께 그 역할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IV.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민간동물보호시설과의 공조체제 마련

향후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신고제로 운영되는 만큼 현재 지자체가 운영 중인 시군동물보호센터의 포획, 보호, 입양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이를 분담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결합시키는 구체화도 필요하다.

1. 신고를 득한 민간동물보호시설 중 일정한 기준을 통해 심사하고 그중 ‘우수시설’을 선정하여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일부 기능을 전담하게 하고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형식의 방안.
2. 시군별로 동물보호법 제4조 ④의 민간단체와 MOU 등 협약을 통한 동물보호·복지 시스템 개선하는 방안 등

민간 거버넌스 구축의 선결 요건

□ 지자체 동물보호 전담의 행정체제 구축 의무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나라 동물보호의 구체적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서울, 경기도)을 제외한 대다수의 지방은 동물보호의 업무 부서를 별도로 두지 않고 현재 거의 농축산과 계열의 부서에서 그 사무를 중복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시민들의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도에 비해 담당 공무원들의 관련법이나 행정규칙의 이해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날로 증가하는 민원을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농축산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피로감으로 인한 기피부서로 인식되어 잦은 인사이동이 그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또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업무뿐만 아니라, TNR사업, 증가하는 들개 포획 민원, 동물등록 사업같이 직접적인 관련 업무는 물론 전반적인 관할 내의 각종 동물보호 업무를 축산업무와 병행하여 전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보다 효율적인 민관협력을 위해서는 동물 구조·보호의 주도적인 책임이 있는 지자체의 전문 담당 인력의 부재는 향후 민관협력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는 위험한 요소이다.

따라서 지자체가 동물복지 전담 부서 또는 전문 담당자의 충원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률적, 행정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 시점이다.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토론회
주제1. 동물보호수준 제고 및 체계 정비

토론 ④

동물보호수준 제고를 위한 정부정책 방향

양성철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사무관

동물보호수준 제고를 위한 정부정책 방향

양성철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사무관

1. 추진 배경 및 현황

- 최근 개,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이는 행위 등 동물학대 사건 증가*에 따라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 관심 증가
 - * 동물보호법 위반 : ('17) 530건(기소201) → ('18) 632(187) → ('19) 1,098(350)
 - 동물 학대자 처벌 및 「동물보호법」 강화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올해만 24건(6.14기준) 등록
- 학대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21.2.12. 시행)하여 벌칙의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슷하나, 실제 처벌은 벌금형이 대부분(최근 3년간 징역형 4건)
 - * 연도별 벌금형 : ('15) 17 → ('16) 21 → ('17) 24 → ('18) 31 → ('19) 35
 - (처벌강화)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 학대행위에 대한 벌칙을 지속 강화
 - *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선) 2년/2천만원('18.3월)
 - ** 동물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3천만원으로 벌칙 추가 강화('21.2월)
 - (학대행위 범위 확대)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18.3월), 애니멀 호딩*(animal hoarding, '18.9월) 등 추가
 -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광고·선전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20.2월)
 - (양형기준) 잔인한 동물학대는 처벌이 강화될 수 있도록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21.4월)하였으나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 미선정(6.7.)
 -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위에 선정되지 않았으나, 동물학대 범위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
- 지자체가 동물보호센터를 관리하고 있으나 보호수준이 열악하고, 사설보호소는 과다수용·개체 관리 소홀 등으로 동물학대 발생
 - * (직영) 53개소, 48천마리 (위탁) 231개소, 88천마리 (사설) 82개소, 18천마리

2. 제도개선 방안(안)

-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동물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게 사육금지처분, 수강명령 등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21)

- 사육금지처분을 받은 학대행위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유한 동물*을 최대 5년 동안 사육·관리 및 보호할 수 없도록 조치
 - 사육금지처분 기간 중에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한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 * 피학대 동물뿐만 아니라 학대행위자가 소유한 모든 동물이 해당될 수 있음
 - 수강명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 받은자는 200시간 범위에서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등 이수
- 사육금지가처분 제도 도입 및 지자체가 구조한 피학대 동물 반환 시 사육계획서 제출 의무 부여('21)
- 동물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피학대 동물이 적정한 치료·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육금지가처분 가능
 - 사육금지처분 및 가처분을 받은자가 사육·관리하고 있는 동물의 격리 여부를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의무 부여
 - * 법원은 사육금지처분 및 가처분을 하는 경우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판결내용 등을 통보하도록 규정
 - 구조된 피학대 동물의 보호기간이 경과하여 소유자 등에게 반환하는 경우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계획서 제출 의무 부여
 - 소유자 등이 계획대로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지 지자체가 점검하고, 계획서 미 제출 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 (현행) 격리기간이 지난 후 소유자가 보호비용을 부담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반환
-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등 동물 학대의 범위 확대
- * 예 : 지나치게 짧은 목줄로 묶어 사육하는 행위, 채광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 감금 사육하는 행위 등 금지 등
- 동물학대 관련 교육 및 지도·단속 강화
- 동물 보호·복지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21년)하고, 동물보호 교육프로그램을 초·중·고 교육 과정에 포함시키는 방안 협의('22)
 - * 교육부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21~'25년)에 동물 존중 등 보호·복지 교육 반영
 - 지자체 동물학대 지도·단속 및 동물보호·복지 전담 인력 확충을 위해 협의(행안부 '22년 기준인건비 반영 요청) 추진
 - * 동물보호 담당 지자체 공무원(동물보호감시원)은 시·군당 1.1명에 불과
 - 지자체 공무원 등이 학대행위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제작·배포

* 학대 발생 시 처리방법, 동물학대 유형별 사례, 자주묻는 사례 등으로 구성

- 동물학대와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 갖춘 전담기관을 설립하여 지자체 공무원의 동물학대 판단 지원, 학대행위자 교육 등 추진
 - 통합콜센터를 운영하여 동물학대 발생 시 처리 방법, 동물보호법 해석 등 동물학대에 대한 전반적인 서비스 제공
 -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동물학대 예방체계 구축
- 동물보호센터는 시설·운영·점검 등 **기준강화***로 센터의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하고, 운영비 지원, 표준 설계도 마련('22) 등을 통해 직영 확충
 - * 보호두수 50마리당 관리인력 1인, 진료 수의사·포획인력 의무 고용, 케이지 쌓기 금지, 케이지 내 평판 비율 50% 등 검토
-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으로 제도권 편입을 추진하고, 시설·운영기준 등을 마련하여 유기동물 등의 보호수준 제고
 - 신고제 정착을 위한 사전 교육·보호시설 보호동물의 중성화 지원 및 시설개선지원 등 여건별 관리 차별화

붙임 1

동물학대에 대한 국가별 최대 형량

* '18.2월 기준(출처 : 「동물학대행위의 범위 및 처벌수위 분석」, 한국법제연구원)

국가	최대 형량	비고
영국	6개월	동물복지법 2006 * 최근 5년으로 형량 늘리는 것을 검토 중 * 벌금 무제한
오스트리아	1년	동물보호법 2004 동물의 보호에 대한 연방법 최근 2년 형으로 올리기 위해 형법 개정 작업 중
포르투갈	1년	법률 번호 400/82에 의한 33번째 개정 형법 그리고 법률 번호 92/95 2014의 두 번째 개정법
스페인	18개월	동물보호법 2007, 형법
덴마크	2년	동물 보호에 관한 법 1991
그리스	2년	법 4039/2012
스웨덴	2년	형법에 있는 '동물 학대'
헝가리	3년	동물에 대한 보호와 인간적인 처우에 관한 1998년의 법 28
독일	3년	동물보호법
네덜란드	3년	동물보건과 복지법 1992
이탈리아	3년	이탈리아 형법 '동물의 감정에 반하는 범죄' 2004
폴란드	3년	동물보호법 1998
핀란드	4년	핀란드 형법 17:14A1
호주	최대 5년	법률은 주마다 다름. - 뉴사우스웨일주와 서호주는 5년의 구금형까지 선고 가능
일본	5년	동물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6월부터 5년으로 상향)
캐나다	5년	캐나다 형법 445조와 445.1조
인도	5년	동물 보건과 복지법 2013
뉴질랜드	5년	동물복지 수정법 2010
미국	최대 51년*	법률은 주마다 다름, 메릴랜드 등 8개주는 5년 * 조지아 주 누범의 경우

붙임 2

동물학대 처벌 강화 관련 제도개선 추진 현황

시행일	구분	내용
'91년	동물학대 신설	① 동물을 합리적 이유 없이 또는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 고통 및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동물학대 행위 적용 제한 규정(법 11조) 1. 축산물위생처리법에 따른 식용목적 도살, 수렵, 약용·공업목적으로 사용, 동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08년	동물학대행위 추가	① 공개된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② 도구 약물, 채찍 채취, 도박 유흥(민속경기 제외)을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시행규칙에 신설 ③ 유기동물을 죽이는 행위
	처벌강화	①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 500만원 이하의 벌금
'12년	동물학대행위 추가	① 유기동물 알선 구매 행위 추가 ② 동물학대 행위 적용 제한 규정 삭제
	처벌강화	① 500만원 이하 벌금 → 1년이하 징역/1천만원이하 벌금
'18.3월	동물학대행위 추가	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추가 ②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추가 ③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오락·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300만원 이하 벌금) ④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300만원 이하 벌금)
	처벌강화	① 1년이하, 1천만원이하 → 2년/2천만원 ② 양벌규정 추가 ③ 유기 처벌강화(100만원 이하 과태료 → 300만원)
'18.9월	동물학대행위 추가	- '애니멀 호딩' * 추가(2년/2천만원) *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질병 및 상해를 입히는 행위
'19.3월	처벌강화	①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 선고 시 5년간 영업 허가·등록 금지
'20.2월	동물학대행위 추가	①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광고·선전하는 행위 추가
'21.2.12	처벌강화	① 학대로 죽음에 이르는 행위(2년/2천만원 → 3년/3천만원) ② 유기 처벌강화(300만원 이하 과태료 → 300만원 이하 벌금)

